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지배주주인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법정시한(2005. 3. 27) 내에 매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그 보유주식의 처분기한을 최장 4년에서 최장 7년으로 연장하여 지배주주가 되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보유주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1월 17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이 헌 재

◎法律 第7339號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

證券去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중 “제한등”을 “제한”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그 特別關係者”를 “그 특별관계

자 및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買受를 할 수 있는 날부터”를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전의 제3항)중 “第11條第1項·第2項·第5項, 第22條 및 第23條第1項”을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개매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 정정신고를 한 경우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정신고서 제출명령에 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개매수기간의 종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제21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전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2. 당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제21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전 10일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

제24조제1항중 “公開買受者”를 “공개매수자(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본문중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買受를 할 수 있게 된 날”을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날”로 한다.

제200조의2제1항 본문중 “이 項에서 같다)이내에 그 保有狀況”을 “이 항, 제4항 및 제200조의3제2항에서 같다) 이내에 그 保有상황과 保有목적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중 “大量保有狀況”을 각각 “대량보유상황·보유목적”으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第1項”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保有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保有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0조의3의 제목중 “제한”을 “제한 등”으로 하고, 동조중 “大量保有狀況”을 “보유상황과 保有목적”으로, “아니한 者”를 “아니한 자 또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자”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00조의2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등의 保有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일부터 5일 동안 당해 발행인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00조의4중 “第11條第1項 내지 第3項”을 “제11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207조의3제3호중 “제186조의5 또는 제200조의4”를 “제186조의5”로 한다.

제209조제4호중 “제23조(제2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23조”로 한다.

제2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1조·제188조제6항 또는 제19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자 5의2. 제20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보고 또는 기재를 누락한 자 제213조제1항제3호중 “第200條의2第5項”을 “제200조의2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23조의2제3항 및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공개매수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의 대량보유 등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0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20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보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에서 100분의 1 이상의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경우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종전의 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자가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 또는 그 목적을 갖게 된 날로 한다.

◇증권거래법 개정이유

최근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합병(M&A) 시도의 증가로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불충분하여 공정한 경영권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업환경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

는바, 공개매수제도 및 주식의 대량보유 공시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공정한 경영권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권 위협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 등의 공개매수제한 폐지 및 공개매수기간중 유가증권발행 허용(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 (1)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과거 6월간 공개매수를 통하여 주식등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공개매수 제한을 폐지함.
- (2) 공개매수기간에도 주식 등의 발행인이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의결권에 변동을 초래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의 명시 의무화 등(법 제200조의2제1항)

주식의 대량보유(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등의 보고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명시하여 보유목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보유목적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 유무를 기준으로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내용을 차등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주식 대량보유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고 의무화 등(법 제200조의2제4항, 제200조의3제2항 신설)

주식의 대량보유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보유목적의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에 대하여 5일 동안 의결권을 제한하며, 주식 등의 추가취득을 금지함.

라. 허위보고 등에 대한 제재 및 처벌(법 제200조의3제1항, 법 제210조 제5호의2 신설)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상황 및 그 변동내용중 중요내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자에 대하여 위반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법제처 또는 국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 [WWW.moleg.go.kr](http://WWW.moleg.go.kr)

국 회 홈페이지 : [WWW.assembly.go.kr](http://WWW.assembly.go.kr)

# 조 약

2002년 7월 2일 제2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2002년10월 30일 제234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얻어 2002년 11월 8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05년2월16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에 대한교토의정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5년 1 월17일

국 무 총 리 이 해 찬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장 관 반 기 문

## ●조약 제1706호

###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에대한교토의정서

이 의정서의 당사자는,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자로서, 협약 제2조에 규정된 협약의 궁극적 목적을 추구하고, 협약의 규정을 상기하며,